

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3일
------	-----	--	---------
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

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
---------	----------

재활용대상물질

가용자원 회수방법	[<input type="checkbox"/>] 퇴비화	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(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회수자원 이용방법

1일 평균취급량	m ³ (톤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	m ³ (톤)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주요 발생지역

	변경 전	변경 후
변경내역		

「하수도법」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·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가. 재활용신고의 경우 1.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.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.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.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.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.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.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유의사항

1.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: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
2.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3.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